

# 협 찬 약 정 서

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함)와 (주)SBS(이하 “SBS”라 함)는 “SBS”가 방송하는 프로그램(이하 “프로그램”이라 한다)과 관련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협찬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.

## 제 1 조 (목 적)

본 약정은 “SBS”가 방송하는 “프로그램”과 관련하여 “서울시”가 참여하는 협찬내역과 “SBS”간의 필요한 권리, 의무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.



## 제 2 조 (제작 협찬 프로그램)

### 가. 모닝와이드 3부

- 가. 방송일시 : 4월 ~ 10월 중 7회(4분물)
- 나. 방송내용 : 서울의 걷기 좋은 길(행사) 소개
- 다. 협 찬 금 : 9천 1백만 원(VAT 포함)

## 제 3 조 (협찬 금액)

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협찬금은 총 91,000,000원(VAT 포함)으로 한다.

## 제 4 조 (상호의무 사항)

### 1. “서울시”의 의무

- 가. “서울시”는 프로그램 제작활동 및 기타 제작진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에 대해 적극 협조 한다.

나. “서울시”는 프로그램 협찬과 관련된 약정체결 및 협찬금 입금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.

### 2. “SBS”的 의무

- 가. “SBS”는 제2조의 프로그램을 성실히 제작, 방송 한다
- 나. “SBS” 편성사정에 의거 방송일자는 순연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SBS”는 “서울시”와 협의하여 조정한다.

## 제 5 조 (약정기간)

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부터 양 기관의 권리와 의무가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.



## 제 6 조 (저작권 등)

“서울시”는 본 프로그램의 방송 후 교육적 또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
## 제 7 조 (협찬금 지급방법)

“SBS”는 제2조 2항의 방송에 따라 방송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및 청구공문을 발행하여 협찬금을 청구하며, “서울시”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“SBS” 입금 계좌로 전액 현금으로 입금한다.

(주)에스비에스의 은행계좌 : (구, 외환은행)

KEB하나은행 234 - 13 - 01075 - 6 / (주)에스비에스

## 제 8 조 (약정해지 및 손해배상)

1.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상호 최고절차에 의거 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.

가. “서울시”가 제 3조와 4조에 정한 약정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방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
나. “SBS”가 제 2조와 4조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2. 제 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해지사유 발생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 제 9 조 (비밀 유지)

양 당사자는 약정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 약정 종료 후에도 동일하다.

## 제 10 조 (준용 및 협의)

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민법, 저작권법 등의 법령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약정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을 보관토록 한다.

2018년 3월 16 일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

서울특별시장



(주)SBS

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

대표이사 사장

박정훈

